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		배포일시	2020. 4. 27.(월) / 총 3매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태경, 서기관 조항석, 주무관 손은수 • ☎ (044) 201-3775, 3776, 3777 	
	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R&D사업본부 도시건축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장 권희상, 선임연구원 노태현, 연구원 이경래 • ☎ (031) 389-6461, 6423, 6340 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28일(화) 주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건축설계 미래인재 위한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

- 6월 8일부터 청년 건축가 모집 접수...1인당 최대 3천만 원 지원
- 해외 우수 건축사무소·연구기관 등에서 최장 12개월까지 현장 교육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.
 -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'19년부터 시행하여 같은 해에 심사를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하였으며, 현재 싱가포르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독일,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명이 연수 중이다.
-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(원)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,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6월 8일(월)부터 6월 19일(금) 18:00 까지다.

- 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, 졸업자,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각 전형에 따라 필수 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, 정확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.

※ 전형별 가점제도 및 제출서류

구분	재 학생	졸업자	재 직자
필수 및 가점	추천서(필수), 연수계획 확정 증빙(5)	연수계획 확정 증빙(5)	추천서(5), 대체인력 채용계획서(5), 연수계획 확정 증빙(5)
공통제출	참가신청서, 연수계획서, 포트폴리오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학위 등 자격증빙		

-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,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, 1차(서면), 2차(심층면접) 심사를 거쳐 7월 중 약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.
-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, 연수자에게는 왕복 항공료, 비자발급비, 사전교육비,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.
-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(<http://archi-training.kr>)를 통해 응모요령 등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.
- 또한, 위의 해외연수 지원과 더불어, 국제 설계공모·프로젝트, 해외 전시 등의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한 역량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. (7월 중 별도 공고)
-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“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,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,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” 이라고 말했다.

- 한편 국토부는,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나,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하여,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시작 시기, 연수국가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조항석서기관(☎ 044-201-37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